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도종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629

발의연월일: 2020. 8. 3.

발 의 자:도종환·전용기·이상헌

유정주・김승원・박 정

이병훈 · 기동민 · 이재정

이규민 · 안민석 · 조정식

홍정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체육계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다른 시도체육회,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 신고할 경우 신고사건을 접수, 조사, 조치하는 상황을 외부에서 알기 어려워 신고 후에도 신고자 또는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.

또한, 현재 징계정보시스템은 '경기단체'에 소속된 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,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경기단체는 "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"만을 의미하여 학교·직장운동경기부 및 통합체육회·대한장애인체육회(지회·지부 포함)에 소속된 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 정보는 관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함.

이에 체육단체에 제기된 신고에 대해서도 통합해서 진행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, 징계정보시스템의 관리대상 징계의 범위에 운동경기부(학교, 직장) 및 통합체육회·대한장애인체육회(지회·지부, 지회·지부의 지회 포함)를 포함하도록 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(안 제18조의8제1항 및 제18조의9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8제1항 중 "경기단체"를 "운동경기부, 통합체육회·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·지회(지부·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), 경기단체"로 한다.

제2장의2에 제1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8조의9(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은 운동경기부, 통합체육회·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·지회 (지부·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), 경기단체에 접수된 스포츠비리, 체육계 인권침해와 관련된 신고의 접수, 처리, 조치 등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체육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・운영,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

일부개정법률

축・운영 등) ① 문화체육관광 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 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 계정보시스템을 구축 · 운영하 여야 한다.

②·③ (생 략) <신 설>

개 정 아

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|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

제18조의8(징계정보시스템의 구 제18조의8(징계정보시스템의 구 축・운영 등) ① -----부장관은 경기단체에 소속된 -----운동경기부, 통합체육 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 회·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 부・지회(지부・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), 경기단체-----

② • ③ (현행과 같음)

제18조의9(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・운영 등) ①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은 운동경기부, 통합체 육회 ·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・지회(지부・지회의 지회 를 포함한다), 경기단체에 접수 된 스포츠비리, 체육계 인권침 해와 관련된 신고의 접수, 처 리, 조치 등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신고관리 시스템을 구축・운영하여야 한 다.
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 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 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체육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 청에 따라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통합신고관리 시스템의 구축·운영,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